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32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320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579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2325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린

피고, 피상고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박근용

판결 선고2021. 10. 14.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579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9. 12.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과 그 처인 피고는 2005. 9.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각 1/2로 하여 공동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의 제1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2) B과 피고는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시가는 86,700,000원이었고,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172,610원,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4,802,874원이었다.

4) 이후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의 책임재산이 16,362,258원만큼 감소하였다는, 위 16,362,258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심은 B의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가액인 43,350,000원(= 86,700,000원 ÷ 2)에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53,975,484원(= 9,172,610원 + 44,802,874원) 전액을 공제한 결과, B의 부동산 지분가액에는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가운데 B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인 1/2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26,987,742원(= 4,586,305원(= 9,172,610원 ÷ 2) + 22,401,437원(= 44,802,874 ÷ 2))이라고 보아야 하고, B 부동산 지분이 전체 피담보채권액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B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6,987,742원이 B의 지분가액 43,35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53,975,484원 전액을 B의 부동산 지분가액에서 공제한 결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 4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2. 6. 27.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2. 9. 12.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조재연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천대엽